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8일, 송재봉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7.) 상정·축조심사·의결

(수정가결)

제1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 상정·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송재봉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은 안정적인 대형가속기 구축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명과 관련하여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반법 체계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정안의 일반법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무상사용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일반법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제명 중 ‘특별법’을 ‘법률’로 수정하고,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지원의 시행주체를 ‘국가’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명시하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국·공 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및 산정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정안은 현재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참고사항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일반법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제명 중 ‘특별법’을 ‘법률’로 수정하고,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지원의 시행주체를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명시하며,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및 산정기준을 법체계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제명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안 제명).
- 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으로 약칭함(안 제6조제3항).
- 다.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유·공유재산인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도록 수정함
(안 제11조제4항).

마.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관련해서 방안 마련 및 경비
지원 주체를 실질적인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2조).

바. 부칙 중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상 규정에 제8조를 추가함(안 부칙 제2조).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특별법”을 “법률”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대형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조제3항 중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를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단체”를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임대료 등 지원)”을 “(사용료·대부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운영기관등으로”를 “운영기관등이”로,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안 제9조 중 “지원사업 관련”을 “지원사업과 관련한”으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운영”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협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11조는”을 “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원안과 같음)
② 국가는 <u>대형가속기를 이용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u>	② ----- <u>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u> ----- ----- ----- -----.
③ 지방자치단체는 <u>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③ ----- <u>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u>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u>단체</u> 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 ----- ----- ----- ----- <u>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u> ----- -----.

④ · ⑤ (생략)

제8조(임대료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
기 구축 및 지원사업 관련 시
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
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④ · ⑤ (원안과 같음)

제8조(사용료·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등이-----

-----제11조제4항에
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대부
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운영-----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

----- 추진할 수 있다.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

----- 「국유재산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⑤ (원안과 같음)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1. ~ 3. (원안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및 <u>협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u>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u>제11조</u>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u>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u>----- -----. 부칙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u>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u>----- ----- ----- ----- -----.
--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제작·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

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기술·정보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